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83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 박상혁 • 박용갑 • 김한규

이해식 • 양부남 • 강준현

노종면 • 정일영 • 김주영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 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공정배상기금법

부 칙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